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의무 규정 신설〉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69호)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2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개요	1
--------------	---

[고동진의원안]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태년의원안]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 . 검토의견	4
-----------------	---

1.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의무 규정 신설	4
---	---

I. 개 요

【고동진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고동진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8. 23.

다. 회 부 일 : 2024. 8.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호텔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임.

이에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자 함(향후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취약 및 다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는 정부 측이 사회적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의2).

【김태년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태년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9. 13.

다. 회 부 일 : 2024. 9.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모든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의 경우, 현행법령 상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여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큰 건

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제2항 및 9항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의무 규정 신설

개정안들은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도 일정 기간 안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고동진의원안 제12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 김태년의원안 제12조 및 부칙 제2조).

현행	고동진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제12조의2(화재취약 다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 ①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 ----- ----- ----- ----- ----- 이 경우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여 화재발생 시

장애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신속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종류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
라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차
단 등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
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
방시설의 점검·정비
를 위하여 폐쇄·차단
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은

-----.

④ -----
-----제1항 및 제2
항에-----

-----.

⑤ -----제4항-----

-----.

⑥ -----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 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략)

<신설>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⑦ -----

제6항에-----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

제12조제1항에-----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⑤ (생략)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2. ~ 6. (생략)

②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

-----.

1. 제12조제3항에-----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생략)

② ~ ④ (생략)

제56조(벌칙) ① 제12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

-----.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 제12조제4항을-----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① 제12조 제4항-----

-----.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6항,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 9. (생략)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2. ~ 15. (생략)

②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

1. 제12조제3항-----

2. ~ 9. (현행과 같음)

제61조(과태료) ① -----

-----.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신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하여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관계인은 제12조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¹⁾의 관계인²⁾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³⁾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제12조제1항),
 현행법 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4]에서 각각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다중이 이용하는 호텔, 여관 등은 숙박시설⁴⁾로 분류되
 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규모 이상
 의 숙박시설은 그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

2)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
 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리하여야 함. 예를 들면,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600 m² 이상인 숙박업소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600m²인 숙박업소는 모든 층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어야 함.

<숙박업소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구분	시설명	설치기준
1. 소화 설비	1)소화기구	연면적 33m ² 이상인 것
	2)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1천5백m ²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m ²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3)스프링클러설비	①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² 이상은 모든 층 ③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m² 이상인 층
	4)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600m² 는 모든 층 ②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² 이상인 것
	5)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m ² 이상인 것
2. 경보 설비	1)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m ²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m ² 이상인 것
	2)비상방송설비	① 연면적 3천5백m² 이상인 것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3)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경우
	4)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600m ² 이상인 것
	5)자동화재속보설비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6)단독경보형 감지기	연면적 600m ² 미만의 숙박시설
	7)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숙박시설
	8)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숙박시설

3. 피난구조설비	1)피난기구	모든 층(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제외)
	2)인명구조기구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3)유도등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4)비상조명등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
	5)휴대용 비상조명등	모든 숙박시설
4. 소화용수설비	1)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5. 소화활동설비	1)제연설비	❶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❷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2)연결송수관설비	❶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❷ ❶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❸ ❶ 및 ❷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3)연결살수설비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4)비상콘센트설비	❶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❷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5)무선통신보조설비	❶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❷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자료: 소방청)

그동안 스프링클러시설 설치와 관련한 현행 법령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1968년에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이 1,500 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기준이 도입되었고,

이후 1981년에 여관·호텔·여인숙으로 11층 이상의 부분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1984년에는 11층 이상의 여관 호텔은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2004년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2017년에는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2022년에는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요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음.

<숙박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변경 현황>

시행일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비 고
1968.01.15.	❖ 소방법 시행령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1,500㎡ 이상	설치기준 도 입
1981.11.06.	❖ 소방법 시행령 ▶ 여관·호텔 또는 여인숙으로 11층 이상의 부분	
1984.07.01.	❖ 소방법 시행령 ▶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소방대상물은 전층	
2004.05.30.	❖ 소방시설 및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4분법
2017.01.28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의정부 아파트화재
2022.12.0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현행기준

(자료: 소방청)

한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나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도록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조문을 두고 있는데(제13조제1항 본문)⁵⁾, 이는 건축 당시

5) - 동 특례조항은 이 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하였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04.5.30.] [법률 제6895호, 2003.5.29., 제정]

적법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그 적법성을 인정하여 신뢰보호와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들은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되, 개정안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새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존의 특정 소방대상물은 일정 기간 안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에서 그 내용이 유사하나,

관계인이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고동진의원안은 “스프링클러설비 등”으로, 김태년의원안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클러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는 기한을 고동진의원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태년의원안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개정안의 내용 비교>

	고동진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소방시설 설치대상	-숙박시설 등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 중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정소방대상물 (안 제12조의2 제1항)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여 화재 발생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안 제12조제1항 후단)
설치·관리 주체	-관계인 (안 제12조의2 제1항)	-관계인 (안 제12조제1항 후단)
설치·관리하 여야 하는 소방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 프링클러설비 등을 신속하게 설치· 관리(안 제12조의2 제1항)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 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 치·관리(안 제12조제1항 후단)
설치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안 제12조의2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안 제12조의2제9항)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안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안 부칙 제1조)
건축이 완료된 특정 소방대상물 에 대한 설치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안 부칙 제2조)	-시행 후 2년 이내 (안 부칙 제2조)

현재 숙박업소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곳은 전체 숙박업소의 9.6%에 불과하다는 점⁶⁾, 소방청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숙박시설, 의료시설, 공장, 공동주택은 화재 시 위험도가 가장 높은 5등급으로 분류된다는 점⁷⁾, 최근 5년간 숙박시설 화재는 총 1,843건 발생하였고 32명이 사망하고 355명이 부상하였으며 약 20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상당하다는 점, 스프링클러가 초기 소화에 효과적이라는 점⁸⁾ 등을 고려할 때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들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6) 소방청에 따르면 전체 숙박시설은 28,029개이고, 이 중 11층 이상인 숙박시설은 2,707개임.

7) <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화재위험평가 결과표’ >

평가등급	대 상 물
5등급	■ 숙박시설, 의료시설, 공장, 공동주택
4등급	■ 판매 및 영업시설,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3등급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동·식물원), 자원순환시설, 운수자동차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창고시설
2등급	■ 지하구, 교정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동물·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1등급	■ 문화재, 업무시설

※ 자료 : 인명안전기준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청 연구용역 자료('18.10월)

8) 관련기사: 중앙일보, 숙박업소 화재 연300건... “스프링클러 의무화 확대 필요”, 2024.8.25.

<최근 5년간 숙박시설 화재 발생 현황>

연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사망(명)	부상(명)	
계	1,843	32	355	20,816,435
2019	365	10	113	3,301,706
2020	344	10	53	2,946,468
2021	375	7	55	4,548,915
2022	382	2	78	4,049,224
2023	377	3	56	5,970,122

(자료: 소방청)

<숙박업소 중 스프링클러/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전체 숙박시설 수(A)	11층 이상인 숙박시설(B)	B/A(%)
28,029개	2,707개	9.6%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22.12.1이후 300㎡이상 600㎡이하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된 대상물에만 적용되어 거의 설치되지 않음.

(자료: 소방청)

다만, 개정안들과 관련하여서는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들은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고동진의원안),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김태년의원안).

구체적인 소요예산은 개정안들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두 개정안이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살펴보면, 소방청은 기존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데 약 2조 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숙박시설은 그 규모 면에서 영세한 곳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개정안들의 입법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가능한 예산의 확보 여부 및 해당 시설 관계자의 자부담 비용 발생 시 이에 대한 관계자의 수용가능성의 정도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스프링클러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단가 등 소요예산9)>

□ 산출내역

구분	스프링클러 (1,000m ²)		간이 스프링클러 (1,000m ²)	
	신축	소급	신축	소급
공사비용	7만원/m ²	9만원/m ²	4.5만원/m ²	6만원/m ²
공사기간 (1,000m ² 기준)	8일	15일	5일	10일
공사방법	전층공사	층별, 실별 부분공사	전층공사	층별, 실별 부분공사

□ 기타사항

- **(공사비용)** 견적금액으로 산정 ※ 공사계약 시 실행가는 낮아질 수 있음
- **(공사기간)** 천장 내부구조 및 특성에 따라 공사기간 변동 가능
- **(공사방법)** 공사구간을 층별로 구획하여 숙박업 영업에 차질 최소화

□ 숙박시설 S/P 소급 시 설치비용

- S/P 설치비용 : 1,000m² 기준 9천만원 (의료시설 소급 시 단가 기준)
- S/P 설치대상수 : 약 25,000개*
- 소급비용 : 약 2조 2천 5백억원 (25,000개 × 9천만원)

(자료: 소방청)

9) 2024년 10월 말 현재, 국회 예산정책처는 동 법률안들에 대한 비용을 추계 중임.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관련 요건 변경은 사회적 의견 수렴, 관련 예산 반영 가능성 등의 검토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¹⁰⁾, 현행법령에서는 소방시설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나(제3조제3항¹¹⁾), 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해당 시설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힘¹²⁾.

기획재정부는 소방시설의 설치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관계인(소유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10)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모든 숙박시설로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4를 개정하면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한 관련 예산 확보와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은 밝힘.

소방청은 기존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호텔, 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등에서 그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기준의 개발 및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2) 소방청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18.1월)를 계기로 기존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소급해서 설치하였고 당시 일부 대상에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함. 구체적으로 소급 관련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라목을 신설하여 마련하였고, 관련 예산확보 및 추진현황 관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힘.

다만, 소급 설치 대상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오래된 건축물에 입점하고 있어 스프링클러를 설치시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외에 건축물 구조 등을 추가로 공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건물주 반대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공사기간 동안 진료가 어려워, 의료기관은 설치비용 외에 수입 감소라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적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서, 현행법에서도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라 자부담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관계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문 의 처
02)6788-5351